

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

본인은 남양주시정연구원 채용 예정자로서 남양주시정연구원 「인사관리 규정」 제19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,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.

[남양주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19조(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[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파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]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20 년 월 일

서약자 : (서명 또는 인)

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귀하

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

성명 :

주민번호 :

채용직위 :

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·열람하였으며, 조회 결과 본인에게 남양주시정연구원 「인사관리 규정」 제19조(결격사유) 등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전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,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남양주시정연구원 「인사관리 규정」 제19조(결격사유) 및 제22조(채용의 철회)에 해당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.

※ 확인방법 :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(<http://crims.police.go.kr>)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

20 년 월 일

서약자 : (서명 또는 인)

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귀하

공정채용 확인서

○ 성명 :

○ 생년월일 :

본인은 남양주시정연구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에 의한 채용 개입이나 기타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당·위법한 행위가 없었으며,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임용의 취소가 가능하며,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 아울러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- 남양주시정연구원 임직원(이사, 감사, 직원 등) 중 본인과 친인척 관계 존재 여부
(있다 □ 없다 □) ※ 친인척 범위: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
- 친인척 관계가 “있다”라고 표기한 경우만 작성

연번	성명(본인)	친인척 직원			
		소속	소속기관	직급	본인과의 관계

남양주시정연구원 소속 임직원 중 본인의 친인척 현황은 위와 같으며,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상기 본인: (서명 또는 인)
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 ① 수집 이용 목적 - 공공기관 채용경로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 등 ② 수집 이용 항목 - 성명, 생년월일, 남양주시정연구원 직원과의 관계 및 친인척의 소속·성명·직급 등 ③ 보유기간: 재직기간 동안 보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채용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을 체결·유지할 수 없습니다.
--	---

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(예 □ 아니오 □)

20 상기 본인: (서명 또는 인)

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귀하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-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	채용방법 경력경쟁채용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 신규채용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 작성용 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연번	문항	해당여부
1	<p>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.</p> <p>※ 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미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	⇒ 1번 문항 '해당' 체크 시 2~4번 진행, '미해당' 체크 시 2~4번 생략	
2	<p>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.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</p> <p>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미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	⇒ 2번 문항 '해당' 체크 시 3~4번 진행, '미해당' 체크 시 3~4번 생략	
3	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</u>, <u>파면</u> 또는 <u>해임</u>된 사실이 있다.</p> <p>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.(5년내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미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4	<p>⇒ 1, 2, 3-1, 3-2. 모두 해당 시,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</p> 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.</p> 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.(5년 내)</p> <p>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이다.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/ 미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	⇒ 1, 2, 4-1, 4-2, 4-3 모두 해당 시,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

*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

(서명)